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36호 2021. 7. 22.(목)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197호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 1
- 사천시 고시 제19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 22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933호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 23
- 사천시 공고 제954호 중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공고 -- 24
- 사천시 공고 제957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32

##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945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3
- 사천시 공고 제946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7
- 사천시 공고 제951호 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75

- 사천시 공고 제952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1
- 사천시 공고 제959호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1
- 사천시 공고 제967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7
- 사천시 공고 제968호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7
- 사천시 공고 제969호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4

<b>회 람</b>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5 / FAX 831-6012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사천시 고시 제2021-197호

##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0-354(2020.11.05.)호로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수립 정정 고시된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내용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변경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7월 22일

##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사업비 : 8,000백만원
4. 주요 사업내용  
가. 기능별 사업내용

사업 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비고
			시행계획 (변경전)	시행계획 (변경후)	
	합 계		8,000.0	8,000.0	
	기초생활기반확충		3,709.4	3,709.4	
	사천활력어울림센터	농산물판매장, 강의실, 다 어울림교육실 등	3,500	3,500	
	다목적 두레장터 조성	주차장(38면), 조경식재 등	209.4	209.4	
	지역경관개선		2,231.0	2,231.0	
	지역공동체 놀이터 조성	어린이정원, 산책로정비 등	960.0	960.0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사업 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백만원)		비고
			시행계획 (변경전)	시행계획 (변경후)	
	Wing-Wing특화거리 조성	정의1길, 읍내로 정비	1,271.0	1,271.0	
<b>지역역량강화</b>			<b>920.8</b>	<b>920.8</b>	
	주민·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주민 및 상인 역량강화 등	271.5	271.5	
	이벤트 및 축제 발굴·개최	축제개발 컨설팅, 축제 개최 등	52.9	52.9	
	공원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및 아뜰리에 개최	82.8	82.8	
	브랜드 및 상품개발	브랜드 및 상품개발 교육 및 워크숍	35.6	35.6	
	아열대 채소농장, 마을기업 운영	마을기업 및 농장교육	83.3	83.3	글로벌 문화교육 프로그램 포함
	McFood페스티벌 개최	축제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페스티벌 개최 및 운영	23.7	23.7	
	Wing-Wing특화거리	커뮤니티 경관디자인 등	91.0	91.0	
	스마트 두레공동체 프로그램	앱 개발, 홍보 및 운영	18.0	18.0	
	마을경영지원	창업지원, 센터운영지원, 회의비 등	262.0	262.0	
<b>부 대 비 용</b>		<b>기본 및 실시 설계, 사업 관리비 등</b>	<b>1,138.8</b>	<b>1,138.8</b>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위탁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장)

6. 사업시행기간 (변경)

○ 당 초 : 2017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변경 : 2017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토지조서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일 련 번 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읍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b>합 계</b>					<b>57,991</b>							
1) 사천활력어울림센터 조성					1,845							
1	사천	정의	401-13	대	264	264	최**외 7	사천읍 정의*길** 외				
2	〃	〃	401-14	대	91	91	사천시					매입
3	〃	〃	401-15	대	258	258	백**	사천읍 정의*길**				
4	〃	〃	401-21	대	110	110	김**	사천읍 정의*길**				
5	〃	〃	401-32	대	25	25	백**	사천읍 정의*길**				
6	〃	〃	402-1	대	74	74	하**	정동면 쇠실*길**				
7	사천	정의	401-10	대	228	228	사천시					
8	〃	〃	401-11	대	105	105	사천시					
9	〃	〃	401-12	대	622	622	사천시					
10	〃	〃	401-34	대	6	6	사천시					
11	〃	〃	401-36	대	62	62	사천시					
2) 다목적두레장터 조성					1,288							
1	사천	정의	389-47	대	34	34	사천시					
2	〃	〃	389-6	대	139	139	사천시					
3	〃	〃	389-8	대	149	149	사천시					
4	〃	〃	396-1	대	93	93	기재부					
5	〃	〃	396-2	대	17	17	사천시					매입
6	〃	〃	396-28	대	165	165	기재부					
7	〃	〃	396-29	대	112	112	기재부					
8	〃	〃	396-30	대	5	5	기재부					
9	〃	〃	401-27	대	44	44	사천시					
10	〃	〃	401-33	대	70	70	사천시					
11	〃	〃	401-37	대	39	39	사천시					
12	〃	〃	401-38	대	4	4	사천시					
13	〃	〃	401-7	대	157	157	사천시					
14	〃	〃	401-8	대	73	73	사천시					
15	〃	〃	401-9	대	187	187	사천시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3) 지역공동체놀이터(수양공원) 조성						47,881						
1	사천	정의	175	전	480	480	사천시					
2	〃	〃	177	전	635	635	사천시					
3	〃	〃	211	대	364	364	사천시					
4	〃	〃	213	공	146	146	사천시					
5	〃	〃	218	공	175	175	사천시					
6	〃	〃	167-10	도	609	609	사천시					
7	사천	정의	167-11	도	120	120	사천시					
8	〃	〃	167-4	도	85	85	사천시					
9	〃	〃	167-5	전	40	40	사천시					
10	〃	〃	174-1	전	601	601	사천시					
11	〃	〃	174-2	도	69	69	사천시					
12	〃	〃	178-1	전	1,053	1,053	사천시					
13	〃	〃	180-5	공	80	80	사천시					
14	〃	〃	210-1	공	1,117	1,117	사천시					
15	〃	〃	210-15	공	99	99	사천시					
16	〃	〃	210-18	공	123	123	사천시					
17	〃	〃	210-2	공	807	807	사천시					
18	〃	〃	210-20	공	27	27	사천시					
19	〃	〃	210-3	공	443	443	사천시					
20	〃	〃	210-4	공	776	776	사천시					
21	〃	〃	210-6	공	256	256	사천시					
22	〃	〃	210-9	공	63	63	사천시					
23	〃	〃	212-1	공	14,218	14,218	사천시					
24	〃	〃	214-1	공	147	147	사천시					
25	〃	〃	214-2	공	510	510	사천시					
26	〃	〃	214-3	공	65	65	사천시					
27	〃	〃	214-4	공	138	138	사천시					
28	〃	〃	219-1	공	154	154	사천시					
29	〃	〃	219-2	공	265	265	사천시					
30	〃	〃	219-3	공	246	246	사천시					
31	〃	〃	219-4	공	21	21	사천시					
32	〃	〃	219-5	공	37	37	사천시					

# 사 천 시 공 보

제 736 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읍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3	사천	정의	219-6	공	23	23	사천시					
34	〃	〃	219-7	공	34	34	사천시					
35	〃	선인	501	공	685	685	사천시					
36	〃	〃	502	공	774	774	사천시					
37	〃	〃	503	공	645	645	사천시					
38	〃	〃	506	공	939	939	사천시					
39	〃	〃	581	대	419	419	사천시					
40	〃	〃	582	공	1,025	1,025	사천시					
41	〃	〃	583	공	737	737	사천시					
42	〃	〃	606	공	152	152	사천시					
43	〃	〃	579-1	공	678	678	사천시					
44	〃	〃	579-2	대	592	592	사천시					
45	〃	〃	579-5	사	3,108	3,108	사천시					
46	〃	〃	579-6	공	855	855	사천시					
47	〃	〃	579-7	대	188	188	사천시					
48	〃	〃	580-2	사	12,965	12,965	사천시					
49	〃	〃	581-1	대	93	93	사천시					
4) Wing-Wing특화거리					6,977							
1	사천	수석	252-3	도	3,692	488	국토부					읍내로
2	〃	〃	251-14	대	60	1	김**	진주시 망경동**				
3	〃	〃	251-15	대	796	9	허**	사천읍 수석리**	삼천포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4	〃	〃	253-10	도	149	136	사천시					
5	〃	〃	251-5	대	10	5	국토부					
6	〃	〃	251-2	도	298	298	사천시					
7	〃	〃	251-7	도	11	11	국토부					
8	〃	〃	761-35	도	8,309	91	국토부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m <sup>2</sup>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읍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	사천	수석	236-4	도	82	82	국토부					
10	〃	〃	234-2	도	45	28	사천시					
11	〃	〃	237-2	도	7	7	국토부					
12	〃	〃	225-2	도	665	600	국토부					
13	〃	〃	761-16	도	26	1	국토부					
14	〃	〃	222-2	전	9	2	사천시					
15	〃	〃	233-1	도	814	460	사천시					
16	〃	〃	230-2	도	88	83	국					
17	〃	〃	230-7	도	26	15	국토부					
18	〃	정의	436	도	399	397	국토부					
19	〃	〃	431	대	73	1	신**	사천읍 정의리**				
20	〃	〃	436-1	도	40	2	기재부					
21	〃	〃	433	잡	56	7	사천시					
22	〃	〃	434	잡	10	4	천**	사천읍 선인리**				
23	〃	〃	435	잡	2	2	국토부					
24	〃	〃	435-1	대	3	2	영화**	진주시 상봉동**				
25	〃	〃	394-76	대	92	1	이** 외 2	사천읍 정의리** 외				
26	〃	〃	390-3	도	1,158	566	사천시					
27	〃	〃	393-4	도	225	221	국토부					
28	〃	〃	390-10	대	86	3	오**	사천읍 정의리**				
29	〃	〃	390-12	대	69	1	이**외 1	사천읍 정의리** 외	삼천포축산업 협동조합	근저당권	1/2	
30	〃	〃	415-13	도	221	7	국토부					
31	〃	〃	416	구	664	8	농식품부					
32	〃	〃	360-2	도	129	128	사천시					
33	〃	〃	359-1	도	36	36	이**	사천읍 평화동**				
34	〃	〃	357-8	도	56	54	국토부					
35	〃	〃	334-2	도	212	206	국토부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읍	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6	사천	정의	325-1	도	23	23	기재부					
37	〃	〃	336-5	도	165	165	사천시					
38	〃	〃	336-3	도	96	96	국토부					
39	〃	〃	321-1	도	69	69	사천시					
40	〃	〃	419	구	161	14	기재부					
41	〃	〃	418	도	65	8	국토부					
42	〃	〃	320-2	도	110	82	사천시					
43	〃	〃	338-1	대	10	10	이**	서울특별시 도곡동**	경남은행	근저당권		
44	사천	평화	201-7	도	85	85	국토부					
45	〃	〃	43-15	도	1	1	사천시					
46	〃	〃	43-6	도	3	3	사천시					
47	〃	〃	43-1	대	3	3	이**	사천읍 평화동**				
48	〃	〃	43-2	도	14	14	사천시					
49	〃	〃	197-20	도	44	43	국토부					
50	〃	〃	247-5	도	415	169	사천시					
51	〃	〃	247-4	도	361	99	사천시					
52	〃	〃	247-6	도	10	10	국토부					
53	〃	〃	252	대	61	6	이**	부산광역시 황령대로**				
54	〃	〃	197-1	구	708	3	국토부					
55	〃	정의	389-3	도	694	694	국토부					정의길
56	〃	〃	390-3	도	1,158	380	사천시					
57	〃	〃	401-2	도	512	512	사천시					
58	〃	〃	404-2	도	453	453	사천시					
59	〃	〃	410-2	도	258	102	국토부					
60	〃	〃	415-15	도	1,887	20	국토부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나.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사천읍 정의리	401-13	근린생활 시설	블럭조강판지붕 (12*7)	84	최**	사천읍 정의*길**				
2	"	"	주택	블럭조스레트 (11*4)	44	"	"				
3	"	"	창고	블럭조스레트 (3*4)	12	"	"				
4	"	"	창고 및 화장실	블럭조스레트 (5*4)	20	"	"				
5	"	"	가추	철파이프조스레트 (11*1)	11	"	"				
6	"	"	수도		1	"	"				
7	"	"	영업보상	공간연출 시설이전비	1	"	"				
8	"	"	영업보상	도심원 시설이전비 등	1	이**	사천읍 정의*길**				
9	"	401-14	근린생활 시설	철근콘크리트	77.02	정**	사천읍 수양로**				
10	"	"	수도		1	"	"				
11	"	"	영업보상	막창&뒷고기	1	김**	사천읍 정의*길**				
12	"	"	시설 이전비 등	주방시설 및 영업시설일체 등	1	"	"				
13	"	"	간판	1*2, 2*4	2	"	"				
14	"	401-15	주택1층	철근콘크리트	121.77	백**	사천읍 정의*길**				
15	"	"	주택2층	철근콘크리트	56.65	"	"				
16	"	"	대문1	철재(3*2) 적벽문주2	1	"	"				
17	"	"	대문2	샷시조(1*2)	1	"	"				
18	"	"	태양광 설비		1	"	"				
19	"	"	수조	콘크리트조(1*3*1)	1	"	"				
20	"	"	다용도실	판넬조판넬(7*2)	14	"	"				
21	"	"	바닥	콘크리트(5*10*1/2)	25	"	"				
22	"	"	가추	철파이프강판지붕 (1.5*2)	3	"	"				
23	"	"	화단1	블럭조(5*1)	1	"	"				
24	"	"	화단2	2*8	1	"	"				
25	"	"	수도		1	"	"				
26	"	"	은목서	R20	2	"	"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7	사천읍 정의리	401-15	동백나무	R10	1	백**	사천읍 정의*길**				
28	"	"	동백나무	R7	2	"	"				
29	"	"	나무수국	R7	1	"	"				
30	"	"	자목련	R7	2	"	"				
31	"	"	사철나무	R20	1	"	"				
32	"	"	사철나무	R5	1	"	"				
33	"	"	철쭉	H1.5, W1.5	9	"	"				
34	"	"	수국		1	"	"				
35	"	"	꽃치자 나무	H1.5	1	"	"				
36	"	"	목단		1	"	"				
37	"	"	기타화분		20	"	"				
38	"	401-21	근린생활 시설	블럭조 스레트위 강판	28.43	김**	사천읍 정의*길**				
39	"	"	주택	블럭조스레트	28	"	"				
40	"	"	주택	블럭조스레트	21	"	"				
41	"	"	창고 및 화장실	블럭조스레트	8	"	"				
42	"	"	계단	콘크리트	1	"	"				
43	"	"	수도		1	"	"				
44	"	"	대문	철재 슬라브	1	"	"				
45	"	402-1	근린생활 시설	경량철골구조	30.24	하**	정동면 쇠실*길**				
46	"	"	주택	블럭조스라브(5*4)	20	"	"				
47	"	"	보일러실	블럭조스레트(1.5*2)	3	"	"				
48	"	"	화장실	블럭조스라브(1*1)	1	"	"				
49	"	"	물탱크	FRP및콘크리트	1	"	"				
50	"	"	가추	스레트(5*2)	10	"	"				
51	"	"	계단	콘크리트(5*1)	1	"	"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2	사천읍 정의리	402-1	대문	샷시조(3*2)	1	하**	정동면 쇠실*길**				
53	"	"	수도		1	"	"				
54	"	"	바닥	콘크리트(5*5)	25	"	"				
55	"	"	영업보상	현대장식	1	"	"				
56	"	"	시설 이전비 등	채고자산 및 영업시설일체 등	1	"	"				
57	"	"	간판	1*2	2	"	"				
58	"	401-12	점포1	블럭조스레트 및 강관지붕(5*5)	25	강**	사천읍 정의*길**				
59	"	"	점포2	블럭조강관지붕(6*3)	18	"	"				
60	"	"	영업보상	한성상회	1	"	"				
61	"	"	시설 이전비 등	고추분쇄기 외 기계시설일체	1	"	"				
62	"	"	전기시설	8KW	1	"	"				
63	"	"	사무실	판넬조(1*2)	2	"	"				
64	"	"	가추	철파이프조 강관지붕(6*4)	24	"	"				
65	"	"	간판	5*1	1	"	"				
66	"	"	점포3	블럭조강관지붕(4*4)	16	차**	사천읍 정의*길**				
67	"	"	점포4	블럭조스레트(3*7)	21	"	"				
68	"	"	점포5	블럭조스레트(3*6)	18	"	"				
69	"	"	영업보상	성민상회	1	"	"				
70	"	"	시설 이전비 등	고추분쇄기 외 기계시설일체	1	"	"				
71	"	"	가추1	강관지붕 (15*(5+3)*1/2)	60	"	"				
72	"	"	가추2	천막(접이식) (7*1)	7	"	"				
73	"	"	냉동고	판넬조(6*2)	12	"	"				
74	"	"	전기시설1	7KW	1	"	"				
75	"	"	전기시설2	4KW	1	"	"				
76	"	"	간판	5*1	1	"	"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8. 본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관계 법령 의제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1) 교통시설

#### ①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 조서

##### ■ 주차장 결정(폐지)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4	주차장	사천읍 수석리 401-10번지 일원	1,165	감) 1,165	-	사천시 고시 제2004-25호 (2004.06.17.)	

##### ■ 주차장 결정(폐지)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주차장	주차장 폐지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401-10번지 일원에 사천 활력거점센터를 건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코자 함

### (2) 공간시설

#### ①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②	수양공원	근린공원	사천읍 정의리 일원	75,511	-	75,511	1966.10.18 건설부고시 제2882호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수양공원	조성계획 변경	○ 수양공원 내 공원시설의 조성현황을 반영하고 조성된 세부시설의 결정을 변경코자 함.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②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 조성계획총괄표

시설의 구분	시설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 원 면 적	<b>75,511</b>	75,511	<b>100</b>	<b>100</b>	288.90	288.90	429.72	429.72	-
시 설 면 적	19,684	21,236	<b>26.1</b>	<b>28.1</b>	288.90	288.90	429.72	429.72	증1,552
도 로 및 광 장	6,271	6,961	<b>8.3</b>	<b>9.2</b>	-	-	-	-	증690
조 경 시 설	3,754	3,648	<b>5.0</b>	<b>4.9</b>	-	-	-	-	감106
휴 양 시 설	1,424	1,446	<b>1.9</b>	<b>1.9</b>	-	-	-	-	증22
유 희 시 설	-	976	-	<b>1.3</b>	-	-	-	-	증976
운 동 시 설	1,208	1,076	<b>1.6</b>	<b>1.4</b>	-	-	-	-	감132
교 양 시 설	4,543	4,619	<b>6.0</b>	<b>6.1</b>	<b>165.94</b>	<b>165.94</b>	366.76	366.76	증76
편 익 시 설	879	905	<b>1.2</b>	<b>1.2</b>	<b>62.96</b>	<b>62.96</b>	62.96	62.96	증26
공 원 관 리 시 설	1,605	1,605	<b>2.1</b>	<b>2.1</b>	-	-	-	-	-
녹 지 및 기 타	55,827	54,275	<b>73.9</b>	<b>71.9</b>	-	-	-	-	감1,552

### ■ 시설조서

#### 1) 시설별 결정(변경)조서

##### 가) 도로 및 광장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도로및광장		6,271	6,961	-	-	-	-	증690
	도로	5,777	6,495	-	-	-	-	증718
1	광장 선인리 583	494	466	-	-	-	-	감28

##### 나) 조경시설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조경시설		3,754	3,648	-	-	-	-	감106
2	잔디광장 정의리212-2	1,608	1,608	-	-	-	-	-
3	분수대 선인리582	319	323	-	-	-	-	증4
4	연못1 선인리579-1	660	637	-	-	-	-	감23
5	연못2 선인리579-6	746	634	-	-	-	-	감112
6	화훼원 선인리503	421	446	-	-	-	-	증25

# 사 천 시 공 보

제 736 호

## 다) 휴양시설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휴양시설		1,424	1,446	-	-	-	-	층22	
7	전망쉼터	정의리212-1	361	369	-	-	-	-	층8
8	휴게쉼터1	정의리150	949	955	-	-	-	-	층6
9	휴게쉼터2	선인리580-2	114	122	-	-	-	-	층8

## 라) 유희시설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유희시설		-	976	-	-	-	-	층976	
22	어린이놀이터	정의리150	-	976	-	-	-	-	층976 신설

## 마) 운동시설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운동시설		1,208	1,076	-	-	-	-	감132	
10	게이트볼장	선인리579-2	1,208	1,076	-	-	-	-	감132

# 사 천 시 공 보

제 736 호

## 바) 교양시설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교양시설		4,543	4,619	<b>165.94</b>	<b>165.94</b>	366.76	366.76	증76	
11	침오정	선인리581-1	1,411	1,480	66.94	66.94	267.76	267.76	증69
12	수양루	선인리580-2	326	326	54	54	54	54	-
13	야외무대	선인리580-2	422	422	-	-	-	-	-
14	생태학습장	선인리503	2,339	2,346	-	-	-	-	증7
15	사적비	선인리580-2	45	45	45	45	45	45	-

## 사) 편익시설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편익시설		879	905	<b>62.96</b>	<b>62.96</b>	62.96	62.96	증26	
16	주차장	선인리614-1	710	710	-	-	-	-	-
17	화장실1	선인리580-2	130	156	36.96	36.96	36.96	36.96	증26
18	화장실2	정의리212-1	39	39	26	26	26	26	-

## 아) 공원관리시설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원관리시설		1,605	1,605	-	-	-	-	-	
19	배수지	정의리148-2	1,605	1,605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자) 녹지 및 기타

구분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녹지 및 기타		55,827	54,275	-	-	-	-	감1,552
20	유보지	선인리172	1,210	1,210	-	-	-	-
21-1	녹지1	정의리175	20,324	20,389	-	-	-	증65
21-2	녹지2	선인리583	4,946	4,946	-	-	-	-
21-3	녹지3	정의리212-1	3,824	3,785	-	-	-	감39
21-4	녹지4	선인리506	3,437	3,459	-	-	-	증22
21-5	녹지5	선인리212-1	6,033	2,446	-	-	-	감3,587
21-6	녹지6	선인리212-1	2,924	2,924	-	-	-	-
21-7	녹지7	선인리212-1	1,284	1,284	-	-	-	-
21-8	녹지8	선인리212-1	1,622	1,622	-	-	-	-
21-9	녹지9	선인리212-1	1,685	1,757	-	-	-	증72
21-10	녹지10	선인리580-2	3,007	3,140	-	-	-	증133
21-11	녹지11	선인리579-5	4,283	3,502	-	-	-	감781
21-12	녹지12	선인리580-2	444	538	-	-	-	증94
21-13	녹지13	선인리580-2	804	924	-	-	-	증120
21-14	녹지14	정의리214-2	-	2,349	-	-	-	증2,349 신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2) 도로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시점	종점	비고
기정		소계			1,582	5,777				
변경		소계			1,927	6,495				
기정	소로	3	1	4	306	1,506	산책로	구역계	광장	-
변경	소로	3	1	5	460	2,248	산책로	구역계	광장	-
기정	소로	3	2	3	113	652	산책로	구역계	광장	-
변경	소로	3	2	4	163	681	산책로	구역계	광장	-
기정	소로	3	3	4	68	276	산책로	주차장	광장	-
기정	소로	3	4	5	201	1,114	산책로	게이트볼장	소로3-2	-
변경	소로	3	4	4	260	1,040	산책로	게이트볼장	소로3-2	-
기정	소로	3	5	5	116	595	산책로	구역계	광장	-
기정	소로	3	6	3	86	253	산책로	소로3-2	화훼원	-
변경	소로	3	6	2.5	144	361	산책로	소로3-2	소로3-4	-
기정	소로	3	7	4	56	224	산책로	구역계	잔디광장	-
변경	소로	3	7	4	58	232	산책로	소로3-2	잔디광장	-
기정	소로	3	8	3	82	249	산책로	잔디광장	소로3-2	-
변경	소로	3	8	2	83	175	산책로	잔디광장	소로3-2	-
기정	소로	3	9	2	108	215	산책로	잔디광장	전망쉼터	-
기정	소로	3	10	2	50	109	산책로	소로3-2	잔디광장	-
변경	소로	3	10	2	56	112	산책로	소로3-2	잔디광장	-
기정	소로	3	11	1.5	33	78	산책로	소로3-6	소로3-2	-
변경	소로	3	11	1.1	33	37	산책로	소로3-6	소로3-2	-
기정	소로	3	12	1.2	116	151	산책로	소로3-7	소로3-9	-
기정	소로	3	13	1.2	80	104	산책로	소로3-7	소로3-12	-
기정	소로	3	14	1.5	167	251	산책로	소로3-12	전망쉼터	-
변경	소로	3	15	1.1	15	17	산책로	게이트볼장	소로3-6	신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1) 도시계획시설(도로:읍내로) 실시계획인가

① 사업의 위치

-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252-3번지 ~ 정의리 320-2번지 일원

②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 시행계획수립  
특화거리(읍내로) 조성

③ 사업의 규모

- 사업면적 : 4,866㎡

④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남도 사천시장

- 주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⑤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준공 : 준공일까지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1	사천읍 수석리	252-3	도	3,692	488	국토교통부				
2	사천읍 수석리	251-14	대	60	1	김**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			
3	사천읍 수석리	251-15	대	796	9	허**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	사천 삼천포 축산업 협동조합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	근저당권
4	사천읍 수석리	253-10	도	149	136	사천시				
5	사천읍 수석리	251-5	대	10	5	국토교통부				
6	사천읍 수석리	251-2	도	298	298	사천시				
7	사천읍 수석리	251-7	도	11	11	국토교통부				
8	사천읍 수석리	761-35	도	8,309	91	국토교통부				
9	사천읍 수석리	236-4	도	82	82	국토교통부				
10	사천읍 수석리	234-2	도	45	28	사천시				
11	사천읍 수석리	237-2	도	7	7	국토교통부				
12	사천읍 수석리	225-2	도	665	600	국토교통부				
13	사천읍 수석리	761-16	도	26	1	국토교통부				
14	사천읍 수석리	222-2	전	9	2	사천시				
15	사천읍 수석리	233-1	도	814	460	사천시				
16	사천읍 수석리	230-2	도	88	83	국				
17	사천읍 수석리	230-7	도	26	15	국토교통부				
18	사천읍 정의리	436	도	399	397	국토교통부				
19	사천읍 정의리	431	대	73	1	신**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			
20	사천읍 정의리	436-1	도	40	2	기획재정부				
21	사천읍 정의리	433	잡	56	7	사천시				
22	사천읍 정의리	434	잡	10	4	천**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 신진아파트가동 ***호			
23	사천읍 정의리	435	잡	2	2	국토교통부				
24	사천읍 정의리	435-1	대	3	2	**홍업 주식회사	진주시 상봉동 ***			
25	사천읍 정의리	394-76	대	92	1	이**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			
						이**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동 ****호 모종동,한라동백아파트			
						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 ***호한빛타운			

# 사 천 시 공 보

제 736 호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지 목	지적(m <sup>2</sup>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26	사천읍 정의리	390-3	도	1,158	566	사천시				
27	사천읍 정의리	393-4	도	225	221	국토교통부				
28	사천읍 정의리	390-10	대	86	3	오**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			
29	사천읍 정의리	390-12	대	69	1	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 남한맨션가-***	사천 축산업 협동조합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진삼로 ****.*	근저당권
						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 남한맨션 나-***			
30	사천읍 정의리	415-13	도	221	7	국토교통부				
31	사천읍 정의리	416	구	664	8	농림축산식 품부				
32	사천읍 정의리	360-2	도	129	128	사천시				
33	사천읍 정의리	359-1	도	36	36	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평화동			
34	사천읍 정의리	357-8	도	56	54	국토교통부				
35	사천읍 정의리	334-2	도	212	206	국토교통부				
36	사천읍 정의리	325-1	도	23	23	기획재정부				
37	사천읍 정의리	336-5	도	165	165	사천시				
38	사천읍 정의리	336-3	도	96	96	국토교통부				
39	사천읍 정의리	321-1	도	69	69	사천시				
40	사천읍 정의리	419	구	161	14	기획재정부				
41	사천읍 정의리	418	도	65	8	국토교통부				
42	사천읍 정의리	320-2	도	110	82	사천시				
43	사천읍 정의리	338-1	대	10	10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우성캐릭터****.****	주식회사 경남은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회원구3.15 대로 *** 석전동, 사천지점	근저당권
44	사천읍 평화리	201-7	도	85	85	국토교통부				
45	사천읍 평화리	43-15	도	1	1	사천시				
46	사천읍 평화리	43-6	도	3	3	사천시				
47	사천읍 평화리	43-1	대	3	3	이**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평화동 **			
48	사천읍 평화리	43-2	도	14	14	사천시				
49	사천읍 평화리	197-20	도	44	43	국토교통부				
50	사천읍 평화리	247-5	도	415	169	사천시				
51	사천읍 평화리	247-4	도	361	99	사천시				
52	사천읍 평화리	247-6	도	10	10	국토교통부				
53	사천읍 평화리	252	대	61	6	이**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번길**, ***동****호(대연동,대연 경동메르빌아파트)			
54	사천읍 평화리	197-1	구	708	3	국토교통부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2)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실시계획인가

### ① 사업의 위치

-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401-9번지 일원

### ②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사업
- 명칭 : 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 시행계획수립  
다목적두레장터 조성

### ③ 사업의 규모

- 사업면적 : 1,245㎡

### ④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남도 사천시청
- 주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⑤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준공 : 준공일까지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지번	지 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 용
1	사천읍 정의리	389-6	대	139	139	사천시				
2	사천읍 정의리	389-8	대	149	149	사천시				
3	사천읍 정의리	389-47	대	34	34	사천시				
4	사천읍 정의리	396-1	대	93	93	기획재정부				
5	사천읍 정의리	396-2	대	17	11	우**	사천군 사천읍 수석리 ***-***			
					6	사천시				
6	사천읍 정의리	396-28	대	165	165	기획재정부				
7	사천읍 정의리	396-29	대	112	112	기획재정부				
8	사천읍 정의리	396-30	대	5	5	기획재정부				
9	사천읍 정의리	401-7	대	157	157	사천시				
10	사천읍 정의리	401-8	대	73	58	사천시				
					15	김**	사천군 사천읍 정의리 ***			
11	사천읍 정의리	401-9	대	187	187	사천시				
12	사천읍 정의리	401-27	대	44	44	사천시				
13	사천읍 정의리	401-33	대	70	70	사천시				

9.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재생과(055-831-3240),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지역개발부(055-851-8146)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198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7. 22.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 : 제2021- 3호
2. 점용·사용 허가 연월일 : 2021년 7월 20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임시 물량장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 사용
4. 점용·사용의 장소
  - 사천시 곤양면 검정리 산44-1번지선 일원
5. 점용·사용의 면적 : 7,511㎡(직접 700㎡, 간접 6,811㎡)
6. 점용·사용의 기간 : 2021년 7월 20일 ~ 2023년 3월 31일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주)산맥엔지니어링 대표 정기찬
  - 나. 주 소 : 진주시 동부로 169번길, 12동 1603호(충무공동,윙스타워)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9.8>

##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사천시 공고 제2021 - 933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사 천 시 장 (직인)

시행자 (점용·사용 자)	상호 및 명칭	사천시장(관광진흥과)		
	대표자 (성 명)	사천시장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소하천명		실안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사천시 실안동 1194-26번지		
	면적	96.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1. 7. 22. ~ 영구점용		
	목적 및 사유	도시계획시설(소로1-83호선)개설공사에 따른 BOX형 라멘교 설치(1경간) L=13.2m, B=12.0m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및 관련서류 1부(건설과 비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사천시 공고 제2021-954호

## 중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중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22.

## 사 천 시 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나. 명 칭: 중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사천시장(재난안전과장)
- 나. 주 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가. 위 치: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08-21번지 일원
- 나. 사업규모: 도로 승상 L=235m, 월류보호공 L=287m 등

###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2021. 7.
- 나. 준공예정일: 2022. 12. 31.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참조
6. 열람기간 및 장소(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
  -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나. 열람장소: 사천시청 재난안전과 비치
7.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청 재난안전과(055-831-3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가.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23필지		18,337	6,551						
1	서포면 자혜리	911-12	도	217	113	사천시					
2	서포면 자혜리	911-7	대	38	38	국	기획재정부				
3	서포면 자혜리	911-8	대	13	13	국	기획재정부				
4	서포면 자혜리	911-9	대	16	16	국	기획재정부				
5	서포면 자혜리	911-10	전	227	227	국	기획재정부				
6	서포면 자혜리	908-12	잡	45	45	국	국토교통부				
7	서포면 자혜리	908-21	도	4,580	1,876	국	국토교통부				
8	서포면 자혜리	908-13	임	246	218	국	기획재정부				
9	서포면 자혜리	908-26	잡	949	631	사천시					
10	서포면 자혜리	911-1	전	97	97	사천시					
11	서포면 자혜리	911-4	대	124	124	사천시					
12	서포면 자혜리	911-5	대	118	118	사천시					
13	서포면 자혜리	911-2	전	174	174	사천시					
14	서포면 자혜리	911-11	전	329	329	박 * 덕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 * * - *				
15	서포면 자혜리	911-6	전	814	690	박 * 덕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 * * - *				
16	서포면 자혜리	산154	임	8,926	128	허 * 환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73길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 736 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윤 * 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97번 길 * *				
17	서포면 자혜리	908-14	대	264	264	국	기획재정부				
18	서포면 자혜리	908-15	대	31	31	국	기획재정부				
19	서포면 자혜리	908-2	대	347	347	사천시					
20	서포면 자혜리	산153-7	도	514	7	사천시					
21	서포면 자혜리	공유수면	-	-	962	-					
22	서포면 자혜리	908-22	제	173	8	국	해양수산부				
23	서포면 자혜리	908-16	대	95	95	국	기획재정부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나. 사용하거나 수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단위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서포면 자혜리	911-1	창고	비닐하우스	11.6	m <sup>2</sup>	사천시					
2	서포면 자혜리	911-1	창고	컨테이너	19	m <sup>2</sup>	사천시					
.	.		가추	철파이프 강판지붕	30	m <sup>2</sup>						
.	.		표고버섯 재배목	참나무 (H:0.9~1.0)	5	톤						
.	.		바닥	쇄석깔기	50	m <sup>2</sup>						
3	서포면 자혜리	911-4	주택 및 점포(1층)	철근콘크리트	95.2	m <sup>2</sup>	사천시					
.	.		점포(1층)	조립식	30	m <sup>2</sup>						
.	.		주택(2층)	조립식	95.2	m <sup>2</sup>						
.	.		바닥	콘크리트	8	m <sup>2</sup>						
.	.		화단	콘크리트	11	m <sup>2</sup>						
.	.		현관	샷시조 아케이드	3.5	m <sup>2</sup>						
.	.		수도	W5*L15	75	m <sup>2</sup>						
.	.		석류나무	H2.0	1	주						
.	.		석류나무	H1.5	1	주						
.	.		소사나무	H0.6	1	주						
.	.		연산홍	H0.6	1	주						
.	.		포도나무	H0.6	3	주						
.	.		목서	H1.0	1	주						
4	서포면 자혜리	911-5	건물	조립식	65.6	m <sup>2</sup>	사천시					
.	.		화분	이전비	25	EA						
.	.		수도	.	1	식						
5	서포면 자혜리	911-2	주택	조적조 강판지붕	120	m <sup>2</sup>	사천시					
.	.		창고	조적조 슬라브지붕	28	m <sup>2</sup>						
.	.		계단	콘크리트 (0.8*3)	1	식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단위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장독대	콘크리트	6	m <sup>2</sup>						
.	.	.	대문	샷시조 (2조식)	1	식						
.	.	.	가추	철재아케이드	24	m <sup>2</sup>						
.	.	.	바닥	콘크리트 (3*11)	33	m <sup>2</sup>						
.	.	.	그늘막	철파이프조 (4*8)	32	m <sup>2</sup>						
.	.	.	견사	목조(4*1.5)	1	식						
.	.	.	화단	자연석(6*1)	6	m <sup>2</sup>						
.	.	.	수도	.	1	식						
.	.	.	담장	블록	9	m <sup>2</sup>						
6	서포면 자혜리	911-11	주택	조립식	36.7	m <sup>2</sup>	박 * 덕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 * * - *				
.	.	.	담장	블록	16.4	m <sup>2</sup>						
.	.	.	창고	비닐하우스	9	m <sup>2</sup>						
.	.	.	축사	비닐하우스	25.4	m <sup>2</sup>						
.	.	.	바닥	콘크리트 (1.5*9)	13.5	m <sup>2</sup>						
.	.	.	보일러실	조립식	3.6	m <sup>2</sup>						
.	.	.	물탱크	FRP (받침대포함)	1	식						
.	.	.	수도	.	1	식						
.	.	.	축사	철골강판	20	m <sup>2</sup>						
.	.	.	축사	블럭강판	20	m <sup>2</sup>						
7	서포면 자혜리	911-6	감나무	R20	4	주	박 * 덕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 * * - *				
.	.	.	유자나무	R20	1	주						
.	.	.	자두나무	R20	1	주						
8	서포면 자혜리	908-12	창고	컨테이너	19.5	m <sup>2</sup>	박 * 덕	경상남도 사천시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단위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서포면 자혜리 ***-*				
			창고	컨테이너	4.5	m <sup>2</sup>						
9	서포면 자혜리	908-13	창고	컨테이너	15.7	m <sup>2</sup>	사천시					
10	서포면 자혜리	908-14	창고	조립식	26.3	m <sup>2</sup>	사천시					
			보일러실	조립식	1	식						
			주택	조립식	75.9	m <sup>2</sup>						
			창고	조립식	50.4	m <sup>2</sup>						
			화장실	조립식	5.3	m <sup>2</sup>						
			담장	블록	13.8	m <sup>2</sup>						
			담장	적벽돌 기와지붕	12.5	m <sup>2</sup>						
			담장	적벽돌 기와지붕	2.5	m <sup>2</sup>						
			가추	철재천막	24	m <sup>2</sup>						
			바닥	콘크리트 (3*8)	24	m <sup>2</sup>						
11	서포면 자혜리	908-14	창고	컨테이너	5.2	m <sup>2</sup>	사천시					
12	서포면 자혜리	908-21, 908-22, 908-26	화장실	RC조 (정화조포함)	63.9	m <sup>2</sup>	사천시					
			수족관	(3*1.5)	1	식						
			세면대	콘크리트	1	식						
			화단	블럭조 (4*3)+(1.5* 2)	15	m <sup>2</sup>						
			박태기 나무	H1.5,W1.2 R7	2	주						
13	서포면 자혜리	908-26	작업장	RC조	184.8	m <sup>2</sup>	사천시					
			물탱크		4	식						
			해수인입 시설	PE (100m)	1	식						

# 사 천 시 공 보

제 736 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단위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 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4	서포면 자혜리	908-2	주택1	조적조 경사 스라브및강판 지붕	80.5	m <sup>2</sup>						
			주택2	조적조 스레트	21	m <sup>2</sup>						
			가추	철골조 (8*8)+(3.5* 2)	71	m <sup>2</sup>						
			다용도실	조적조스라브	13	m <sup>2</sup>						
			보일러실	판넬조 (1*2.5)	2.5	m <sup>2</sup>						
			비닐하우스	철재(3.5*2.5 )	8.75	m <sup>2</sup>						
			바닥	콘크리트	125	m <sup>2</sup>						
			물탱크	FRP	1	식						
			수도		1	식						
			담장	블럭조 (1.7*13)	22.1	m <sup>2</sup>						
			벚나무	R40	1	주						
			감나무	R20	1	주						
			유실수	R30	1	주						
15	서포면 자혜리	908-16	창고	컨테이너	19.5	m <sup>2</sup>	사천시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사천시 공고 제2021 -957호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 7. 22.

##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1. 7. 22. ~ 2021. 8. 5.(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107로 9113	BMW 520d	이*민	2021.7.15	개인 렌트업자에게 렌트수익을 배분받는 조건으로 차량을 인도하였으나 그 후 비용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량의 소재 또한 불상이므로 운행정지 신청함.

###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민원교통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사천시 공고 제2021-945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 및 재심의 규정과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과 재심의 규정 등 신설(안 제12조)

나.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추가(안 별표 6)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14, FAX : 831-6033)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12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전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제3항”을 “도 조례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자란 중 생년월일란에 “(남/여)”를 추가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생년월일란에 “(남/여)”를 추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p> <p>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p> <p>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u>벽면 이용 간판</u></p> <p>2. ~ 6. (생략)</p> <p>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p> <p>① ~ ③ (생략)</p> <p><u>&lt;신설&gt;</u></p>	<p>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u>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u>」(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u>벽면 이용 간판</u></p> <p>2. ~ 6. (현행과 같음)</p> <p>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 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u></p>

<신 설>

연장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⑥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⑦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신 설>

⑧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

법·절차, 안전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2(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17조의2(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 도 조례 제12조제3항-----

② ~ ⑦ (현행과 같음)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p>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제곱미터 이하</li> <li>-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li> <li>-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li> </ul> <p>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li> <li>-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li> <li>-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li> </ul> <p>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li> <li>-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li> <li>-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li> </ul> <p>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p> <p>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제곱미터 이하</li> <li>-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li> <li>-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li> </ul> <p>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li> <li>-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li> <li>-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li> </ul> <p>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p>	<p>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p>	<p>13만원</p> <p>22만원</p> <p>32만원</p> <p>42만원</p> <p>50만원</p> <p>64만원</p> <p>75만원</p> <p>100만원</p> <p>129만원</p> <p>130만원+ 연면적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p> <p>8만원</p> <p>12만원</p> <p>14만원</p> <p>25만원</p> <p>33만원</p> <p>49만원</p>

-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
- 2.1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제곱미터 이상 3.7제곱미터 이하
- 3.8제곱미터 이상 4.4제곱미터 이하
- 4.5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6.1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하
- 8.1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8만원

67만원

79만원

80만원+ 연면적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이상 10장 이하</li> <li>- 11장 이상 20장 이하</li> <li>- 21장 이상</li> </ul>		<p>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p>
라. 전단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이상 10장 이하</li> <li>- 11장 이상 20장 이하</li> <li>- 21장 이상</li> </ul>		<p>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p>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이상 10장 이하</li> <li>- 11장 이상 20장 이하</li> <li>- 21장 이상</li> </ul>		<p>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p>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p>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p>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p>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p>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p>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p>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 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 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본 교육 및 보충 교육 불참 시 각 1회 불참으로 본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 원 미만은 버린다.
8.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관 련 법 규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 1. 6.>

4. 삭제 <2016. 1. 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주민협회의 운영) ③ 주민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946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2020.12.2.)』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함으로써 재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나.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 다. 재난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부터 안 제20조까지)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310,

FAX: 831-6036)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 개정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1. 본부장: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차장: 부시장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4. 대변인: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
  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국·소장. 다만, 해당 국·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6.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4.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
5. 통제관: 재난 수습 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제7조(대책본부의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6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3.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의 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5.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 제3장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소장

3.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소장 및 과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3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⑥ 시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 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정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상태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상남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재난수습 홍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도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별표 1]

## 실무반의 임무(제3조제1항제7호 관련)

###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국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 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본부장 등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등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차)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카)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파) 통합지원본부 철수 시 업무인수 및 반별 재분장 하) 재난현장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거) 재난대응, 피해복구 등 총괄 예산 확보 및 관리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구 분		업무와 역할
	4) 행정지원팀	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재난상황관리·보고서 작성·분석 평가팀 업무 협조 동향업무, 미담수범사례 파악 등
나. 협업가능반	1)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사) 사망자 장례지원 등 아) 그 밖에 긴급생활안정 및 구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
	2)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폐기물처리 관련 예산확보, 인허가 등 업무 지원 마)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3) 긴급통신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통신사 지역별 비상연락 체계 구축 마)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응급 복구반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응급복구 관련 예산확보 및 지원 라)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TV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구 분	업무와 역할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 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 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육상, 해상 및 항공 교통통제 상황관리 및 교통수단 지원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다) 그 밖에 교통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피해자, 유가족지원 포함)
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사) 이재민, 유가족 심리지원 등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가구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 구조·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상황관리총괄반에서 통합운영)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마)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각종회의 준비)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사) 본부장 등 각종 지시사항 처리 아) 상황근무자 배치 근무명령 등 자)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차)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문자서비스 송출) 요청 카)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시스템운영 하) 통합지원본부 철수 시 업무인수 및 재분장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3) 행정지원팀	가) 주요 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동향업무, 미담수범사례 파악 등
나. 협업 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구급반	
다.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업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 사 천 시 공 보

제 736 호

[별표 2]

## 재난 수습 주관부서(제3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교육부	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평생학습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우주전파 재난 3. 정보통신 사고 4.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5.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재난안전과
외교부	6.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재난안전과
국방부	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과
행정안전부	8. 공공청사 9.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10.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11.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한파·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회계과 도로과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
문화체육관광부	12.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체육과
농림축산식품부	13. 가축 질병 14. 저수지 사고	농축산과 건설과
산업통상자원부	15.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6. 원유수급 사고 17.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18. 전력 사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보건복지부	19. 보건의료 사고	치매관리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 감염병 재난	보건위생과
환경부	2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2. 식용수 사고 2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5. 황사 26. 미세먼지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고용노동부	27.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우주항공과
국토교통부	28. 도로터널 사고 29. 육상화물운송 사고 30. 항공기 사고 31.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도로과 민원교통과 민원교통과 민원교통과

# 사 천 시 공 보

제 736 호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32.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건축과
해양수산부	33.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4. 조수(潮水) 35.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6. 해양 선박 사고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금융위원회	37.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지역경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38. 인접지역 방사능 누출 사고	환경보호과
소방청	39. 화재·위험물 사고 40.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재난안전과 시설관련부서
문화재청	41.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산림청	42. 산불 43. 산사태	녹지공원과 녹지공원과
해양경찰청	44.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해양수산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별표 3]

##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5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 당 관	통 제 관	총괄 조정 관	차장	본부 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시 대책본부 운영상황	시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시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시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 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가. 비상 1단계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		
실무반	인 원	총 $5 + \alpha + \beta$ 명	
	반 장	재난주관부서 담당업무팀장	
	상황관리총괄반 (4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1명)	재난안전상황실 1명
		상황보고서 작성팀(1명)	재난안전과 1명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1명)	재난안전과 1명
		행정지원팀(1명)	행정과 1명
	협업기능반 ( $\alpha$ 명)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해당부서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 등)
		긴급통신 지원반	정보통신과
		시설피해응급 복구반	해당부서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녹지공원과, 산업입지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가능복구반	지역경제과
		재난수습 홍보반	공보감사담당관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재난안전과
		교통 대책반	민원교통과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보건소
자원봉사 자원 및 관리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질서 유지반	사천경찰서		
수색, 구조·구급반	사천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beta$ )	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 KT사천지점,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 한국도로공사경남지역본부진주시사, 창원기상대, 군부대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남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나. 비상 2단계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			
실무반	인 원	총 $7 + \alpha + \beta$ 명		
	반 장	재난주관부서 담당업무팀장		
	상황관리총괄반 (6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1명)	재난안전상황실 1명	
		상황보고서 작성팀(2명)	재난안전과 2명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2명)	재난안전과 2명	
		행정지원팀(1명)	행정과 1명	
	협업기능반 ( $\alpha$ 명)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해당부서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 등)	
		긴급통신 지원반	정보통신과	
		시설피해응급 복구반	해당부서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녹지공원과, 산업입지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지역경제과	
		재난수습 홍보반	공보감사담당관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재난안전과	
		교통 대책반	민원교통과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보건소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질서 유지반		사천경찰서		
수색, 구조·구급반	사천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beta$ )		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 KT사천지점,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 한국도로공사경남지역본부진주시사, 창원기상대, 군부대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남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다. 비상 3단계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		
실 무 반	인 원	총 8+ $\alpha$ + $\beta$ 명	
	반 장	재난주관부서 담당업무팀장	
	상황관리총괄반 (7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2명)	재난안전상황실 1명, 재난안전과 1명
		상황보고서 작성팀(2명)	재난안전과 2명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2명)	재난안전과 2명
		행정지원팀(1명)	행정과 1명
	협업기능반 ( $\alpha$ 명)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해당부서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 등)
		긴급통신 지원반	정보통신과
		시설피해응급 복구반	해당부서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녹지공원과, 산업입지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지역경제과
		재난수습 홍보반	공보감사담당관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재난안전과
		교통 대책반	민원교통과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보건소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질서 유지반	사천경찰서		
수색, 구조·구급반	사천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beta$ )	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 KT사천지점,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 한국도로공사경남지역본부진주시사, 창원기상대, 군부대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남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 736 호

[별표 5]

## 자연(사회)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연 재 난	가. 풍수해 (태풍·호우 ·대설)	비상1단계	1) 「기상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비상2단계	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대설주의보,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3)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비상3단계	1) 기상특보 중 대설경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2)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인하여 막심한 재난예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비상1단계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2)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비상2단계	1)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2)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 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4)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비상3단계	1)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2)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3)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 736 호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연재난	다. 가뭄	비상1단계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예·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발표된 경우	
		비상2단계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예·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모두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발표된 경우 가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상3단계	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라. 폭염	비상1단계	1) 기상청장이 정하는 육상국지예보구역(이하 “육상국지예보구역”이라 한다)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육상국지예보구역의 10% 이상 40% 미만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상2단계	1)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육상국지예보구역의 40% 이상 60% 미만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상3단계	1) 육상국지예보구역의 8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마. 한파	비상1단계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4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상2단계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상3단계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8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회재난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 736 호

[별표 6]

## 사회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1. 편성기준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 시 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		
	인 원	총 10+ $\alpha$ + $\beta$ + $\gamma$ 명	
	반 장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업무팀장	
실무반	재난상황총괄반 (9명)	상황관리총괄팀(3명)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1) 재난수습 주관부서(2)
		수습상황파악팀(4명)	사회재난 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행정지원팀(2명)	행정과 1명 기획예산담당관 1명
	협업기능반 ( $\alpha$ 명)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해당부서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 등)
		긴급통신 지원반	정보통신과
		시설피해응급 복구반	해당부서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산업입지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지역경제과
		재난수습 홍보반	공보감사담당관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재난안전과
		교통 대책반	민원교통과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보건소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질서 유지반	사천경찰서
		수색, 구조·구급반	사천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 $\beta$ ) (재난상황총괄반에서 협업)		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 KT사천지점,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 한국도로공 사경남지역본부진주지사, 창원기상대, 군부대 등	
현장 지원반( $\gamma$ ) (협업기능반에서 협업)		재난수습 주관 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 재난대응협업반, 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유형 및 재난 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관 련 법 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지역대책본부회의)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사천시 공고 제2021-951호

「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2.18.) 및 시행('21.1.1.)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생활 수준 증진을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교육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 사 천 시 공 보

제 736 호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10, FAX : 831-6013)

# 사 천 시 공 보

제 736 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5. 강사에 관한 사항

제4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은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관 련 법 규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2. 21., 2020. 2. 18.>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2. 21., 2020. 2. 18.>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사천시 공고 제2021-952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 항목 정비(안 별표 1)

1)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종

- (삭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5,000원

2) 일반행정 관계: 1종

- (삭제) 공유재산 대부 신청

• 신규: 1건 5,000원

•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3) 수산업 관계: 6종(신설 2, 삭제 4)

- (신설) 관상어양식업 신고: 1건 1,000원
- (신설)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1건 9,000원
- (삭제)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1건 800원
- (삭제) 수산 동식물의 채포금지 해제허가: 1건 3,000원
- (삭제)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 승인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 (삭제) 육상양식업(육상종묘생산업) 변경허가: 1건 2,000원

## 4) 환경 관계: 1종

- (삭제)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1건 5,000원

나. 제증명 등 수수료 명칭 변경사항 및 띄어쓰기 등 정비(안 별표 1)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나.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없음

##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청(참조: 세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세무과)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886,  
FAX: 831-6099)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 증 명 〉			
1.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 확인	1통	300원	
2.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	500원	
(2) 중소기업자	1통	500원	
(3) 광업, 공업, 상업	1통	500원	
(4) 농가, 비농가	1통	5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2) 생산실적	1통	300원	
(3) 수출실적	1통	300원	
(4) 납품실적	1통	300원	
(5) 건물사용	1통	300원	
(6) 공장원료 수요	1통	300원	
(7) 분배농지 상환완료	1통	300원	
(8) 실수요자 증명	1통	300원	
(9) 시설보유 증명	1통	300원	
(10) 식품, 환경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1통	3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농지	1통	300원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가) 대장문서	1통	300원	
(나) 토지도면	1통	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다)	건물도면	1	통	300	원		
(3)	공부 및 부분열람						
(가)	기본료	1	시간당	100	원		
(나)	초과료	10	분당	100	원		
(4)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	건	100	원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	건	600	원		
(6)	<삭제>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	필지	400	원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	흑백발급	1	필지	1,000	원		
(나)	컬러발급	1	필지	1,500	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	건	800	원	인터넷 신청 시 무료	
7.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	통	500	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	통	500	원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	통	300	원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	통	300	원		
(5)	보상금 지불증명	1	통	300	원		
(6)	면세용도 물품증명	1	통	300	원		
8.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1	통	300	원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	통	300	원		
9.	그 밖의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1건	800원	
(나)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1건	800원	
(2) 소방시설 완비증명	1건	500원	
(3) 그 밖에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300원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5)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6)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1건	800원	
(8)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1건	800원	
〈인가, 허가,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			
<b>1. 일반행정 관계</b>			
(1)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2)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3)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4) 토지등급설정심사 청구신청	1매	500원	
(5)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100원	
(6) 그 밖에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원	
<b>2. 산림 관계</b>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건	500원	
(2)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원	
<b>3. 농축산 관계</b>			
(1) 축사 표준설계 도서발급신청	1매	200원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원	
(3) 농지보전관계 다년생식물 재배신청	1건	500원	
(4) 잠건매매 주선업의 허가신청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6)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7) 농어촌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원	
(8) 농어촌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원	
<b>4. 수산업 관계</b>			
(1)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신청	1건	500원	
(2) 어획물 양육(전적) 허가신청	1건	1,000원	
(3) 근해어업 허가신청	1건	4,500원	
(4) 어업면허 또는 <u>양식업(해조류·패류·어류 등·복합·협동·외해)면허</u> 신청	1건	5,000원	
(5)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	1건	3,000원	
(6)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대표자선정·변경·지분변경) 또는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1건	1,000원	
(7) 어업권(지분) 또는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1건	4,000원	
(8)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분할 인가신청	1건	2,500원	
(9)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변경 인가신청	1건	3,000원	
(10) 면허사항 변경신고 (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1건	1,000원	
(11) 관리선 사용의 지정·어선 사용승인 및 (양식)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	1건	1,000원	
(12)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및 (양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	1건	1,000원	
(13) 연안어업 허가신청	1건	2,500원	
(14) 구획어업 허가신청	1건	4,500원	
(15) 한시어업허가(허가연장) 신청	1건	2,000원	
(16) 시험어업 또는 시험양식업 신청	1건	2,000원	
(17) <u>어구·시설물</u> 또는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	1건	3,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8) <u>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u>	1건	3,000원	
(19) <u>내수면어업 허가</u>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1건	5,000원	
(20) <u>내수면어업 면허</u> (정치망어업)	1건	9,000원	
(21) <u>내수면어업 면허</u> (공동어업)	1건	7,500원	
(22) <u>내수면어업 신고</u>	1건	1,000원	
(23) <u>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u>	1건	5,000원	
(24)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500원	
(25) 어업허가사항 또는 양식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원	
(26) 어업허가사항 또는 양식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500원	
(27) 어업신고	1건	1,500원	
(28)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29) 삭제			
(30) 면허(양식면허)신청 기간의 연장신청	1건	1,000원	
(31)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또는 양식업면허증, 양식업허가증, 관리선사용지정(승인)증 재발급	1건	1,000원	
(32) 삭제			
(33)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포기 신고	1건	1,000원	
(34) 허가·신고어업 또는 <u>양식업 폐업 신고</u>	1건	800원	
(35) 허가어업 휴업(재개) 신고	1건	1,000원	
(36) <u>&lt;삭제&gt;</u>	1건	800원	
(37)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원	
(38)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1건	2,000원	
(39) 입어 재결신청	1건	3,000원	
(40)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원	
(41) <u>&lt;삭제&gt;</u>	1건	3,000원	
(42) <u>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u> 해제허가	1건	3,000원	
(43) 어업권(지분)이전·변경등록	1건	1,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4)	삭제			
(45)	삭제			
(46)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47)	<u>&lt;삭제&gt;</u>	1건	1,000원	
(48)	<u>낙시어선업</u> 신고	1건	2,500원	
(49)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원	
(50)	어획물운반업 변경	1건	2,000원	
(51)	<u>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 및 육상 등 내수양식업)</u> 허가 신청	1건	4,000원	
(52)	삭제			
(53)	<u>&lt;삭제&gt;</u>	1건	2,000원	
(54)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변경허가)신청	1건	2,000원	
(55)	어선건조·개조발주 허가(변경허가)신청	1건	1,000원	
(56)	<u>어선 등록</u>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원	
(57)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 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1건	1,000원	
(58)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1건	4,000원	
(59)	삭제			
(60)	낙시터업(허가, 등록) 신청	1건	2,500원	
(61)	낙시터업 변경(허가, 등록)신청	1건	1,500원	
(62)	낙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1건	1,500원	
(63)	<u>관상어양식업</u> 신고	<u>1건</u>	<u>1,000원</u>	
(64)	<u>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u>	<u>1건</u>	<u>9,000원</u>	
<b>5.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b>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1건	1,000원	
(2)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1,000원	
(3)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원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1건	20,000원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원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원	
(8)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10,000원	
(9)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업) 신고	1건	10,000원	
(10) <u>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u>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원	
(1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원	
(1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원	
(1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원	
(1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원	
(15)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원	
(16)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1건	1,000원	<증명> 3.(8)에서 이 기
(17) 공장등록대장등본 발급	1건	1,000원	
<b>6. 건설 관계</b>			
(1)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허가	1건	허가사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2)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시행허가	1건	허가사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3) 토석, 사력 등 공유수면 및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4) 그 밖에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 허가(식물의 재식 및 농업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 1/1,000	
(5)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6)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원	
(7)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허가	1건	1,000원	
(8)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원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도선장설치 허가신청	1건	1,000원	
(1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14)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원	
(15) 옹벽 및 공작물 등 출조허가 신청	1건	1,000원	
(16) 건축사 신상 변동사항 신고	1건	500원	
(17) 공영주택 양수·양도 및 승인신청	1건	500원	
(18)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원	
(19)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20)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500원	
(21)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원	
(22)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원	
(23) 체비지소유자 확인서	1건	500원	
(24)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원	
<b>7. 보건사회 관계</b>			
(1) 분뇨종말처리시설 액상 폐기물 정화조 설계시공(청소)업자 등록증 교부신청	1건	500원	
(2)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의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	1건	500원	
(4)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1건	500원	
(5)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500원	
(6) 묘지개장 허가신청	1건	500원	
(7)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건	500원	
(8)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가) 종합병원	1건	100,000원	
(나) 일반병원	1건	100,000원	
(9) 개설허가사항 변경(부속의료기관 포함)			
(가) 종합병원(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40,000원	
(나) 일반병원(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40,000원	
(10)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조산소)개설신고 사항(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40,000원	
(11)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조산소)개설신고 사항 변경 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20,000원	
(12)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3) 치과 기공소 인정사항	1건	5,000원	
(14)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	10,000원	
(1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	10,000원	
(17) 인·허가 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18) 휴·폐업 확인 신청	1건	500원	
(19) 위생처리업 신고	1건	30,000원	
(20) 세척제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	
(21)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0,000원	
(22)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	10,000원	
(23)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4)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5)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26)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27)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1건	5,500원	
(28)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3,000원	
<b>8. 문화관광 관계</b>			
(1)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3)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5)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6) 게임제작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7)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8)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9)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원	
(10) 일반 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1건	5,000원	
(11)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2) 청소년 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3)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4)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1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19)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20)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1)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22)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23)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4)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2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30)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3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2)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34)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60,000원	
(35)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원	
(36)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50,000원	
(37)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원	
(38) 유원시설업(종합·일반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1건	30,000원	
(39) 유원시설업(종합·일반유원시설업 제외) 변경신고	1건	15,000원	
(40)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b>9. 상수도 관계</b>			
(1)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	1건	4,000원	
(나) 갱신	1건	2,000원	
(2)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 금액 100분의1로 한다.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3)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4)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5)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b>10. 체육시설업 관계</b>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b>11. 환경 관계</b>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3) <삭제>			
<b>12. 부동산중개업 관계</b>			
(1)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신청			
(가) 법인	1건	30,000원	
(나) 개인	1건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3)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원	
(4)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5) 부동산중개업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원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9. 21.]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1. 4. 6.>

###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1. <삭제>	
12. <삭제>	
3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55. <삭제>	
91. <삭제>	
10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외해양식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21.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면제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81.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1건당 1,500원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신고어업의 폐업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104의19.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8.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낙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104의15.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27의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양식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	1건당 9,000원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959호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실익이 없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규정 정비 : 상위법의 정의에 따르도록 함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사업지구” ⇨ “지적재조사지구”로 변경
  - “일필지조사” ⇨ “토지현황조사”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http://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토지관리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841, FAX : 831-6094)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사업”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를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여성인재”를 “특정 성(性)의 전문인력”으로, “인정되어 사천시 여성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5항”을 “제5항까지”로, “소속”을 “사천시 소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 위원”을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일필지 조사”를 “토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지현황조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토지소유자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를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여성인재”를 “특정 성(性)의 전문인력”으로, “인정 되어 사천시 여성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 위원”을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담당주사”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추진단”을 “사천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업”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밖의 사업”을 “밖에 지적재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조사사업”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 ④ (생략)

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 「사천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 ② (생략)

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

② -----  
----- 제5항까지-----  
----- 사천시 소속 -----  
-----  
-----  
-----  
-----.

제5조(위원의 임기) ① -----  
----- 한 차례만 -----.

② -----  
-----  
----- 전임자 임기-----  
-----.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적재조사지구-----

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계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 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조직 및 구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경계결정위원

-- 토지현황조사 -----  
-----  
-----.

제11조(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토지소유자협의회 -----  
-----.  
----- 지적재조사지구 -----  
-----.

③·④ (현행과 같음)

<삭제>

제14조(조직 및 구성) ① -----  
-----  
-----

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천시 여성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간사) ① 경계결정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천시 지적재조사추진단 담당주사로 한다.

② (생략)

제19조(회의 및 운영) ① ~ ⑤ (생략)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관인은

-----  
-----

--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

---. ----- 특정 성(性)의 전문인력 -----

----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 한 차례만 -----.

② ----- 전임자 임기-----.

제18조(간사) ① -----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회의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사천시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 4. (생략)

제22조(의견청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③ · ④ (생략)

제2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제20조(위원의 해촉) 사천시장--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22조(의견청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지적제조  
사지구-----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조직 및 구성) ① 추진단에 단장 1명, 팀장 2명을 둔다.

②·③ (생략)

제26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기술·인력·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지구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7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규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구

제25조(조직 및 구성) ① 사천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기능) -----  
-----.

1. -----  
지적재조사지구-----  
-
2. 지적재조사사업-----  
-----  
--
3. ----- 지적재조사지구 -----  
---
4. --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  
--

<삭 제>

성 운영관리

4. 토지소유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
6. 사업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자, 대행자 교육 및 지적재조사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9. 사업지구의 지정 신청
10.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11. 주민설명회 및 사업지구 추진 동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
12.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일필지조사 업무
14. 사업지구 사전조사표 작성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15. 사업지구 내 지적기준점 조사·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16.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 정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7.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
18. 사업시행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9. 사업지구 경계점 설정·조정·결정에 관한 사항
20. 지적재조사 확정측량검사에 관한 사항
21. 입체지적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23.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4. 경계결정, 조정금 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
25. 사업지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26. 사업지구 성과열람, 개별통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7.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운영
28. 최신 측량기술 개발·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9.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

축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제30조(수당 등) 제26조에 따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관 련 법 규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3., 2017. 4. 18., 2019. 12. 10.,>

1. “지적공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토지현황조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적소관청”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사천시 공고 제2021-967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안에 따라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현실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정액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 규정 정비(안 제8조)

나. 사용료의 반환 규정 정비(안 제9조)

- 조문 기술방식을 미반환 원칙에서 반환 기준으로 전환

- 사용신청 취소 시 사용일 10일 전까지 전액, 1일 전까지 90퍼센트 반환

다. 입장권 발행 규정 완화(안 제12조)

- 시장의 검인 → 시장 또는 수탁자와 협의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11, FAX : 831-6013)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 또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수탁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시(운영주체)가 주관하는”을 “시 및 수탁자가 주최·주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장애인 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천시에서 주최하는”을 “시에서 주최·주관하는”으로 한다.

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우대인증을 소지한 사람(다만,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연 등에만 해당된다)

3. 제15조에 따라 문화가족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감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면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또는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일 10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용자는 매표용 입장권을 발매하기 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사용허가) <u>시장</u>은 회관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u>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시(운영주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u></p> <p>4. (생략)</p> <p>제8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전액감면</p> <p style="padding-left: 20px;">가. 국가 또는 <u>시(운영주체)가 주관하는 행사</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생략)</p> <p>2.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50</p>	<p>제3조(사용허가)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p> <p>-----</p> <p>-----</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u>국가 또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수탁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u></p> <p>4.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p> <p>① -----</p> <p>-----</p> <p>-----.</p> <p>1.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u>시 및 수탁자가 주최·주관하는 -----</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1. -----</p>

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배우자

2.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  
퍼센트 감면

가. 「사천시 인구증가 시책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우대인증을 받는 사람(다만, 사천시에서 주최  
하는 공연 등에만 해당된  
다)

나. (생략)

다. 조례 제15조에 따라 문화  
가족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  
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소외계  
층에게는 전 관람석수의 20퍼센  
트 이내에서 무료관람권을 배부

-----

가. 「장애인복지법」 -----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  
-----

2. -----  
-----

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  
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우대인증을 소지한  
사람(다만,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공연 등에만 해  
당된다)

나. (현행과 같음)

<삭제>

3. 제15조에 따라 문화가족회원  
으로 등록된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감면

③ -----  
-----  
-----  
-----

할 수 있다. (다만, 사천시에서 주최하는 공연 중 잔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함)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회관자체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2. 제7조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용일 10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는 70퍼센트 반환
2.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는 50퍼센트 반환
3. 삭 제<2019.6.4.>

제12조(입장권 발행) ①·② (생략)

----- 시에서 주최  
· 주관하는 -----  
-----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시 또는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  
경우
3. 사용일 10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한다.

제12조(입장권 발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표용 입장권은 발매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  
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  
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는 대표용 입장권을  
발매하기 전에 시장 또는 수탁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관 련 법 규

###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사천시 공고 제2021-968호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안에 따라 사천시 사천미술관의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반환규정 정비(안 제10조)

- 조문 기술방식을 미반환 원칙에서 반환 기준으로 전환
- 사용신청 취소 시 사용일 15일 전까지 전액, 1일 전까지 90퍼센트 반환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http://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청(참조: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10, FAX : 831-6013)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미술관 자체”를 “시 또는 미술관의 특별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에”를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7일”을 “1일”로, “사용료의 70퍼센트”를 “사용료의 9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제2조(정의) ----- ----- <u>뜻</u> -----.</p> <p>1. 2. (현행과 같음)</p>
<p>제4조(사용허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술관 자체의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u>시</u> 단위 행사</p> <p>3. (생략)</p>	<p>제4조(사용허가)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사천시(이하 “시”라 한다)</u> -----</p> <p>3. (현행과 같음)</p>
<p>제9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① (생략)</p>	<p>제9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u>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u></p> <p>1. <u>미술관 자체</u> 사정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p> <p>2. (생략)</p>	<p>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u></p> <p>1. <u>시 또는 미술관의 특별한</u> -----</p> <p>2. (현행과 같음)</p>

3. 사용개시일 15일 전에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  
부를 반환한다.

1.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70퍼센트

2.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3. (생략)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 전까지 ---  
-----

② -----  
-----  
-----.

1. ----- 1일 -----  
----- 사용료의 90  
퍼센트

<삭 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삭 제>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관 련 법 규

###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사천시 공고 제2021-969호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청(참조: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12, FAX : 831-6013)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천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사천시”를 “시”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건립, 이전 및 철거”를 “건립 및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조형물”을 “공공조형물”로 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공공조형물”이란 <u>사천시</u>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동상·탑·기념비 등)과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및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등을 말한다.</p> <p>3. ~ 8. (생략)</p>	<p>제2조(정의) ----- ----- 뜻은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사천시(이하 “시”라 한다)</u> ----- ----- ----- ----- -----.</p> <p>3. ~ 8. (현행과 같음)</p>
<p><u>제3조(적용 범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u>제3조(적용 범위)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제4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이전·교체·철거를 포함한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u>시장</u>에게 건립 인·허가</p>	<p>제4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 ----- ----- ----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u></p>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천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

3. (생략)

② (생략)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이전 및 철거에 관한 사항

2.·3. (생략)

4.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략)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  
-----  
-----.

1. (현행과 같음)

2. 시-----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건립 및 이의신청-----  
청-----

2.·3. (현행과 같음)

<삭제>

5. ----- 공공조형물-----  
-----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제12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삭 제>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6호

## 관 련 법 규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